# 무배당 **하나세테크 e 연금저축보험** 상품요약서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하나세테크e연금저축보험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상품의 특이사항

## Q:「무배당 하나세테크 e 연금저축보험」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무배당 하나세테크e연금저축보험」은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는 매년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연금개시이후 에는 노후준비가 가능한 연금보험입니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온라인 채널에서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무배당 하나세테크e연금저축보험」은 10년 이상 기본보험료를 완납한 계약에 한하여 향후 기본보험료 납입시(선납시 해당회차 계약응당일)에 납입회차(실제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납입회차기준)별로 아래 장기납입보너스 해당금액을 적립액에 가산하여 적립합니다.

납입회차	장기납입보너스						
121회 이상	기본보험료의 0.5%						
보헌계약이 변경 등을 이유로 기보보험료가 변경되	[]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시절부터 변경된 기보보험료						

보험계약의 변경 등을 이유로 기본보험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기본보험료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Q:「무배당 하나세테크e연금저축보험」의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무배당 하나세테크e연금저축보험」의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합산)이고, 당해연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400만원(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300만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금융소득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만 50세 이상의 경우 600만원(2022년 12월 31일 까지))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2%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납입보험료의 15%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O:「무배당 하나세테크e연금저축보험」은 적립액의 인출이 가능한가요?

- A : 「무배당 하나세테크e연금저축보험」은 보험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적립액의 인출은 다음 순서에 따라 인출한 것으로 봅니다.
  - (1) 과세제외금액(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 (2) 이연퇴직소득
  - (3) 소득세법 제20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금액

다만, 인출후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20% 해당액과 1 구좌당 200 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적립액 인출후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장래의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인출후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관련 세법에 따라 발생 가능한 세금 포함)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 인출할 수 없습니다.

(2) 및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관련 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인출시 적립액에서 차감됩니다.

## Q:「무배당 하나세테크e연금저축보험」은 납입완료 후 연금수령시(연금개시후) 어떻게 과세가 되나요?

A. 「무배당 하나세테크e연금저축보험」에서 계약자가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 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 득세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 령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합니다.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 다.

#### [연금수령]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거나, 의료비인출 또는 부득이한 사유(약관 제2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제4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출

# [연금수령요건]

가입일 이후 5년 이후,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 [연금수령한도]

연금한도액 = 
$$\frac{$$
과세기간개시일 $^{(\bar{\gamma}_1)}$  현재 연금재원평가총액  $\times 1.2$ 

(주) 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세기간개시일로 합니다. 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 [의료비인출]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

#### [의료비 연금계좌]

1인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지정이 가능하며,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인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Q:「무배당 하나세테크e연금저축보험」의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는 무엇인가요?

A. 「무배당 하나세테크e연금저축보험」은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부터 보험료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보험료납입 일시중지'라 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신청가능횟수는 총 5회를 한도로 하며, 1회 신청당 12개월(최소 3개월)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또한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은 누적하여 36개월(기본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 개월수 포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이후의 납입기일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만큼 연기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만큼 연장됩니다.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 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합니다.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 연기됩니다.

다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제4조의 저축성 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동안 계약유지를 위해 월대체보험료(계약유지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를 매월 계약해당일에 적립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그때부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며, 회사는 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납입최고(독촉)를 합니다.

# Q:「무배당 하나세테크e연금저축보험」은 계약의 이전이 가능한가요?

- A. 「무배당 하나세테크e연금저축보험」은 다음 (1) 또는 (2)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 (1) 소득세법령에서 정하는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연금저축
  - (2) 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퇴직연금(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개인 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한 퇴직연금에 한하며 이하 '개인형퇴직연금'이라 합니다) 계약자가 해지환급금 등 제지급금을 이체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정의 수수 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련세법에 의해 연금계좌의 인출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되 지 않습니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경우 인출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Q:「무배당 하나세테크e연금저축보험」은 계약자가 사망하는 경우 계약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수 있나요?

A. 「무배당 하나세테크e연금저축보험」의 계약자가 사망하고 그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가 이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 계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합니다.

# Q:「무배당 하나세테크e연금저축보험의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 「무배당 하나세테크e연금저축보험」의 기본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계약을 변경할 때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는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개시나이 - 2세' 연 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납입주기와 달리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해당월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납입이 가능합니다.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 = 기본보험료 총액(기본보험료 X 12 X 보험료납입기간)의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액
  - + 적립액 인출금액(적립액의 인출금액은 기본보험료 적립액의 인출금액, 추가납입보험료 적립액의 인출금액 및 장기납입보너스에 의한 적립액의 인출금액 포함)

#### Q:「무배당 하나세테크e연금저축보험」의 연금의 종류는 어떻게 정하나요?

A. 「무배당 하나세테크e연금저축보험」은 처음 보험가입 할 때에는 종신연금형만 선택가능하며, 연금개시 전까지 아래의 연금지급형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종신연금형	10년 보증형, 20년 보증형, 30년 보증형, 100세((100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보증형
확정연금형	5년 확정형, 10년 확정형, 20년 확정형, 30년 확정형, 100세((100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확정형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다면 종신까지 연금을 지급합니다.(단, 보증기간 동안에는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 개시기간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연금을 확정지급 합니다.

#### Q:「무배당 하나세테크e연금저축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나요?

A. 「무배당 하나세테크e연금저축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Ⅱ. 보험가입 자격요건

# 1. 보험기간

=	구분	보험기간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보험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del>종</del> 신연금형	연금지급개시나이 연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보험기간	확정연금형	연금지급개시나이 연계약해당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까지			

# 2.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

- 보험료 납입기간: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전기납

-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 3. 연금지급개시나이 및 가입나이

구분	내용
연금지급개시나이(Y)	만 55세 ~ 85세
가입나이	 만 19세 ~ 최대 77세

# 4. 연금지급형태

종신연금형	10년 보증형, 20년 보증형, 30년 보증형, 100세((100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보증형
확정연금형	5년 확정형, 10년 확정형, 20년 확정형, 30년 확정형, 100세((100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확정형

<sup>※</sup> 보험가입시점의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만 선택할 수 있으며, 약관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확정연금형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5. 보험료 납입한도

#### 가. 기본보험료

- 1구좌기준: 5만원이상 150만원 이하로 한다.

나 뭐이죠. 5년		L L'7.		
기본보험료 납입기간(M)	5 년납	7 년납	10/15/20 년납	전기납
5만원 이상		_	만19세~(Y-M-8)세	_
10만원 이상	만19세~(Y-M-5)세	만19세~(Y-M-3)세	만19세~(Y-M-1)세	-
15만원 이상	만19세~(Y-M-3)세	만19세~(Y-M-2)세	만19세~(Y-M)세	만19세~(Y-M)세

<sup>※</sup> 전기납의 경우 10년을 최소 납입기간으로 함

## 나. 추가납입보험료

- ①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 = 기본보험료 총액(기본보험료×12×납입기간)의 200%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액 + 적립액 인출금액의 합계액
- ② 적립액의 인출금액은 기본보험료 적립액의 인출금액, 추가납입보험료 적립액의 인출금액 및 장기 납입보너스에 의한 적립액의 인출금액을 포함한다.
- ③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월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이 가능합니다.
- 다.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액은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

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하며, 적립액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으로 합니다.

# Ⅲ.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 1. 상품의 구성

무배당 하나세테크e연금저축보험 (주계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제도성특약)

# 2.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급부별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 [종신연금형]

지급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금액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피보험자의 생존할 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후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 지급 (10년, 20년, 30년, 100세((100-연금지급개시나이)년)보증)

# [확정연금형]

지급사유	연금지급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 (5년, 10년, 20년, 30년, 100세((100-연금지급개시나이)년) 확정)의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확정지급
지급금액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연금지 급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후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연금지급기간동안 지급

(주)

- 1. 보험가입시점의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만 선택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약관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4호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확정연금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 「적립액」이란 기본보험료 적립액, 추가납입보험료 적립액, 장기납입보너스에 의한 적립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3.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이후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하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이후의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4. 「공시이율」은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 5.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사망당시의 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 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 6.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100세((100-연금지급개시나이)년))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100세((100-연금지급개시나이)년))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계약자가 보증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약관 제2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2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합니다.
- 7.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당시 회사의 경험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경험 연금사망률 및 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8. 확정연금형의 경우 확정연금지급기간(5년, 10년, 20년, 30년, (100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확정연금지급기간(5년, 10년, 20년, 30년, (100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약관 제2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2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합니다.
- 9. 연금액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나누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0. 종신연금형 보증지급기간 및 확정연금형 확정연금지급기간의 '100세'란 '100세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 3.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 가. 계약의 무효관련 사항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나.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 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 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 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Ⅳ. 보험료 산출기초

#### 1. 적용이율

#### O: 적용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데, 이 할인율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하나세테크e연금저축보험」의 적용이율은 연 2.50%이며, 동 이율은 적립액 및 해지환급금을 보증하는 이율은 아닙니다.

# 2. 적용위험률(개인연금사망률)

#### Q: 적용위험률(개인연금사망률)이란 무엇인가요?

A: 한 개인이 연금개시 이후에 사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연금사망률이 높으면 연금액은 올라가고, 낮으면 연금액은 내려갑니다.

	개인연구	금사망률
연금지급개시나이	남자	여자
55세	0.001470	0.000620
65세	0.002480	0.000810
75세	0.008460	0.003310

<sup>※</sup> 개인연금사망률의 가입나이 기준은 40세 입니다.

## 3.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 Q: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은 무엇인가요?

A: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 4. 적립이율

적립이율이란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의 납입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적립해 나가는데,이 적립금을 부리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무배당 하나세테크e연금저축보험」은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회사채 수익률, 국고채 수익률 및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을 반영한 외부지표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 기준이율에서 장래 운용수익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상품으로서 2021년 1월 현재 적립이율은 2.65%입니다. 「공시이율」이 변동될 경우「무배당 하나세테크e연금저축보험」의 적립이율도 변경됩니다.

#### ♣ 공시이율 산출방법 요약

- 「무배당 하나세테크e연금저축보험」에 적용하는 공시이율은 아래의 공식으로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장래 운용수익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 적용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무배당 하나세테크e연금저축보험」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기준이율 = 내부지표  $\times$  (1  $\alpha$ ) + 외부지표  $\times$   $\alpha$
- 내부지표는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하고, 외부지표는 회사채 수익률, 국고채 수익률 및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을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 5. 최저보증이율

최저보증이율은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여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해드리는 적립이율의 최저한도로서 「무배당 하나세테크e연금저축보험」에 적용된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연 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복리 0.75%입니다.

# ∨.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 배당은 배당 상품에 한하여 실시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하나세테크e연금저축보험」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 VI.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1.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등 안내

# Q: 해지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도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우리 하나생명보험회사는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해지공 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 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 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 습니다.

# 2.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기본보험료 30만원, 30세 가입, 60세 연금지급개시, 20년납, 단위:원]

		최저보	<u> 증이율(5년</u>	<u> 1.25%</u>	, 5년초과	10년이내 1.0%, 10년초과 0.75%) 적용					
경과			남자					여자			
기간	실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적립금	적립률	실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 <del>률</del>	적립금	적립률	
	(A)	(B)	(B/A)	(C)	(C/A)	(A)	(B)	(B/A)	(C)	(C/A)	
3개월	900,000	856,601	95.2%	856,601	95.2%	900,000	856,601	95.2%	856,601	95.2%	
6개월	1,800,000	1,715,873	95.3%	1,715,873	95.3%	1,800,000	1,715,873	95.3%	1,715,873	95.3%	
9개월	2,700,000	2,577,817	95.5%	2,577,817	95.5%	2,700,000	2,577,817	95.5%	2,577,817	95.5%	
1년	3,600,000	3,442,431	95.6%	3,442,431	95.6%	3,600,000	3,442,431	95.6%	3,442,431	95.6%	
2년	7,200,000	6,927,893	96.2%	6,927,893	96.2%	7,200,000	6,927,893	96.2%	6,927,893	96.2%	
3년	10,800,000	10,456,923	96.8%	10,456,923	96.8%	10,800,000	10,456,923	96.8%	10,456,923	96.8%	
4년	14,400,000	14,030,066	97.4%	14,030,066	97.4%	14,400,000	14,030,066	97.4%	14,030,066	97.4%	
5년	18,000,000	17,647,873	98.0%	17,647,873	98.0%	18,000,000	17,647,873	98.0%	17,647,873	98.0%	
6년	21,600,000	21,262,153	98.4%	21,262,153	98.4%	21,600,000	21,262,153	98.4%	21,262,153	98.4%	
7년	25,200,000	24,912,576	98.9%	24,912,576	98.9%	25,200,000	24,912,576	98.9%	24,912,576	98.9%	
8년	28,800,000	28,672,617	99.6%	28,672,617	99.6%	28,800,000	28,672,617	99.6%	28,672,617	99.6%	
9년	32,400,000	32,470,258	100.2%	32,470,258	100.2%	32,400,000	32,470,258	100.2%	32,470,258	100.2%	
10년	36,000,000	36,305,875	100.8%	36,305,875	100.8%	36,000,000	36,305,875	100.8%	36,305,875	100.8%	
15년	54,000,000	55,575,528	102.9%	55,575,528	102.9%	54,000,000	55,575,528	102.9%	55,575,528	102.9%	
20년	72,000,000	75,578,713	105.0%	75,578,713	105.0%	72,000,000	75,578,713	105.0%	75,578,713	105.0%	
25년	72,000,000	78,302,862	108.8%	78,302,862	108.8%	72,000,000	78,302,862	108.8%	78,302,862	108.8%	
30년	72,000,000	81,130,711	112.7%	81,130,711	112.7%	72,000,000	81,130,711	112.7%	81,130,711	112.7%	

[기준: 기본보험료 30만원, 30세 가입, 60세 연금지급개시, 20년납, 단위:원]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M	in[ 평균공	·시이율 2.259	%, 2021년	<u> 1월 현재 공시이율(2.65%)] 적용</u>						
경과				여자								
기간	실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적립금	적립률	실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적립금	적립률		
	(A)	(B)	(B/A)	(C)	(C/A)	(A)	(B)	(B/A)	(C)	(C/A)		
3개월	900,000	858,026	95.3%	858,026	95.3%	900,000	858,026	95.3%	858,026	95.3%		
6개월	1,800,000	1,720,860	95.6%	1,720,860	95.6%	1,800,000	1,720,860	95.6%	1,720,860	95.6%		
9개월	2,700,000	2,588,502	95.9%	2,588,502	95.9%	2,700,000	2,588,502	95.9%	2,588,502	95.9%		
1년	3,600,000	3,460,952	96.1%	3,460,952	96.1%	3,600,000	3,460,952	96.1%	3,460,952	96.1%		
2년	7,200,000	6,999,776	97.2%	6,999,776	97.2%	7,200,000	6,999,776	97.2%	6,999,776	97.2%		
3년	10,800,000	10,618,224	98.3%	10,618,224	98.3%	10,800,000	10,618,224	98.3%	10,618,224	98.3%		
4년	14,400,000	14,318,086	99.4%	14,318,086	99.4%	14,400,000	14,318,086	99.4%	14,318,086	99.4%		
5년	18,000,000	18,101,196	100.6%	18,101,196	100.6%	18,000,000	18,101,196	100.6%	18,101,196	100.6%		
6년	21,600,000	21,969,425	101.7%	21,969,425	101.7%	21,600,000	21,969,425	101.7%	21,969,425	101.7%		
7년	25,200,000	25,924,690	102.9%	25,924,690	102.9%	25,200,000	25,924,690	102.9%	25,924,690	102.9%		
8년	28,800,000	30,042,554	104.3%	30,042,554	104.3%	28,800,000	30,042,554	104.3%	30,042,554	104.3%		
9년	32,400,000	34,253,070	105.7%	34,253,070	105.7%	32,400,000	34,253,070	105.7%	34,253,070	105.7%		
10년	36,000,000	38,558,323	107.1%	38,558,323	107.1%	36,000,000	38,558,323	107.1%	38,558,323	107.1%		
15년	54,000,000	61,677,232	114.2%	61,677,232	114.2%	54,000,000	61,677,232	114.2%	61,677,232	114.2%		
20년	72,000,000	87,516,722	121.6%	87,516,722	121.6%	72,000,000	87,516,722	121.6%	87,516,722	121.6%		
25년	72,000,000	97,656,672	135.6%	97,656,672	135.6%	72,000,000	97,656,672	135.6%	97,656,672	135.6%		
30년	72,000,000	108,989,868	151.4%	108,989,868	151.4%	72,000,000	108,989,868	151.4%	108,989,868	151.4%		

[기준: 기본보험료 30만원, 30세 가입, 60세 연금지급개시, 20년납, 단위:원]

	2021년 1월 현재 공시이율(2.65%) 적용									
경과				여자						
기간	실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적립금	적립률	실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적립금	적립률
	(A)	(B)	(B/A)	(C)	(C/A)	(A)	(B)	(B/A)	(C)	(C/A)
3개월	900,000	858,595	95.4%	858,595	95.4%	900,000	858,595	95.4%	858,595	95.4%
6개월	1,800,000	1,722,854	95.7%	1,722,854	95.7%	1,800,000	1,722,854	95.7%	1,722,854	95.7%
9개월	2,700,000	2,592,776	96.0%	2,592,776	96.0%	2,700,000	2,592,776	96.0%	2,592,776	96.0%
1년	3,600,000	3,468,361	96.3%	3,468,361	96.3%	3,600,000	3,468,361	96.3%	3,468,361	96.3%
2년	7,200,000	7,028,633	97.6%	7,028,633	97.6%	7,200,000	7,028,633	97.6%	7,028,633	97.6%
3년	10,800,000	10,683,253	98.9%	10,683,253	98.9%	10,800,000	10,683,253	98.9%	10,683,253	98.9%
4년	14,400,000	14,434,720	100.2%	14,434,720	100.2%	14,400,000	14,434,720	100.2%	14,434,720	100.2%
5년	18,000,000	18,285,601	101.6%	18,285,601	101.6%	18,000,000	18,285,601	101.6%	18,285,601	101.6%
6년	21,600,000	22,238,531	103.0%	22,238,531	103.0%	21,600,000	22,238,531	103.0%	22,238,531	103.0%
7년	25,200,000	26,296,213	104.4%	26,296,213	104.4%	25,200,000	26,296,213	104.4%	26,296,213	104.4%
8년	28,800,000	30,535,187	106.0%	30,535,187	106.0%	28,800,000	30,535,187	106.0%	30,535,187	106.0%
9년	32,400,000	34,886,494	107.7%	34,886,494	107.7%	32,400,000	34,886,494	107.7%	34,886,494	107.7%
10년	36,000,000	39,353,111	109.3%	39,353,111	109.3%	36,000,000	39,353,111	109.3%	39,353,111	109.3%
15년	54,000,000	63,621,929	117.8%	63,621,929	117.8%	54,000,000	63,621,929	117.8%	63,621,929	117.8%
20년	72,000,000	91,281,371	126.8%	91,281,371	126.8%	72,000,000	91,281,371	126.8%	91,281,371	126.8%
25년	72,000,000	103,873,955	144.3%	103,873,955	144.3%	72,000,000	103,873,955	144.3%	103,873,955	144.3%
30년	72,000,000	118,225,863	164.2%	118,225,863	164.2%	72,000,000	118,225,863	164.2%	118,225,863	164.2%
(天)										

- (주)
- 1.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2. 상기 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 평균공시이율 2.25%와 현재(2021 년 1월)의 공시이율 2.65% 중 낮은 이율, 현재(2021년 1월)의 공시이율 2.65%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입니다.
- 3. 실제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 시 해지환급금도 변동됩니다.
- 4. 공시이율은 매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5년이내 1.25%, 5년초과 10년이내 1.0%, 10 년초과 0.75%입니다.
- 5.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의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 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6. 상기 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 및 현재 적립이율이 경과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7.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Ⅶ. 모집수수료율

# Q: 모집수수료율이란 무엇인가요?

A : 모집수수료란 보험회사가 내부 수수료 규정에 따라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에게 보험판매, 계약관리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

[가입조건 : 남자 40세, 60세 연금개시, 20년납, 월납, 기본보험료 월 30만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이후	합계
모집수수료율	0.11%	0.11%	0.11%	0.40%	0.73%

- ※ 1차년도~4차년도 이후까지의 "연도별 모집수수료율"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전체보험료 대비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연도별 모집수수료율"의 비율입니다.
- ※ "모집수수료율 합계"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전체보험료 대비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전체 모집수수료"의 비율입니다.
- ※ 위에서 예시한 모집수수료율은 보험회사가 모집인에게 장래에 지급될 급액을 예상한 것으로, 실제 지급될 모집수수료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Ⅷ. 공제금액 공시에 대한 사항

# 1. 기본비용 및 수수료

[기준 : 남자30세, 60세 연금개시, 20년납, 월납, 기본보험료 월 30만원]

		, , , , , , , , , , , , , , , , , , ,	26, 10202 2 3000
1~7년	8~10년	11~20년	21~30년
5.02%	3.00%	3.00%	0.83%

※ 상기 비율은 경과기간별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월기본보험료로 나눈 값임.

구분	목적	시기	비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7년 이내: 기본보험료의 2.02%(6,060원)
보험관계비용	계약관리비용	매월	납입기간 이내: 기본보험료의 3.00% (9,000원) 납입기간 이후: 0.83%(2,500원)
연금수령기간 중 비용	연금수령기간 중의 관리비용	연금수령시	연금연액의 0.5%
해지공제	해지에 따른 패널티	해지시	아래 도표 참조*

# □ 해지공제액

경과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이상
해지공제금액(만원)	0	0	0	0	0	0	0	0
해지공제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 2. 추가 비용 및 수수료

구분	목적	시기	비용
추가납입보험료	계약관리비용	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2.0% <sup>(주)</sup>
적립액 인출 수수료	적립액 인출에 따른 비용	적립액 인출시	 없음

(주) 다만, 적립액의 인출금액을 재납입할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은 *Min*(추가납입보험료의 0.3%, 30,000 원)을 부과함